

2014년 8월
석사학위 논문

한국의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필요성과 방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문화학과

김슬기

한국의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필요성과 방향-

The Culture ODA of Korea
-The Necessity and Future Direction-

2014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문화학과

김슬기

한국의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필요성과 방향-

지도교수 이 승 권

이 논문을 문학(국제문화)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 제 문 화 학 과

김 슬 기

김슬기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송선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문석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승권 (인)

2014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공적개발원조	4
제1절 공적개발원조란 무엇인가	4
제2절 공적개발원조 결정요인	6
제3장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10
제1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10
1. 수치로 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10
2. 정부의 정책과 조직체계	12
제2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과 한계	14
1.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과의 차이	14
2. 인도주의적 결정요인 미흡과 신생공여국의 한계	17
제4장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	24
제1절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가치	24
제2절 한국의 문화 공적개발원조 가능성	27
제3절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세 가지 과제	30

1. 문화향유와 문화감성	30
2. 수원국의 자생과 경제적 원조의 병행	32
3. 거시적인 정부정책의 필요	34
제5장 한국의 문화 공적개발원조	37
제1절 해외의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현황과 시사점	37
제2절 한국의 문화 공적개발원조 운용프로그램 제안	43
1. 축제보존프로그램	43
2. 언어보존프로그램	46
3. 번역 프로그램	47
4.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허브시설 활용	50
제6장 결론	52
참고문헌	54

표 목 차

<표 1>	공적개발원조의 유형과 분류기준	5
<표 2>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공여실적(순지출 기준)	10
<표 3>	2011년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의 주요 국가별 지원 규모 (순지출, 미국백만달러)	11
<표 4>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중점 지원국가 현황	13
<표 5>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형태 및 집행체제	14
<표 6>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 공여실적 (순지출 기준)	15
<표 7>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총국민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구성비	17
<표 8>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설 및 채택여부	20
<표 9>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의미	25
<표 10>	DAC 원조목적코드 전체 체계와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 /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의 상세표	29
<표 11>	엘더퍼의 욕구이론	31
<표 12>	5개국의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예산 현황	38

ABSTRACT

The Culture ODA of Korea -The Necessity and Future Direction-

Seulki Kim

Advisor : Prof. Seung-Kwon Lee Ph.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ulture Studies,
Graduates school of Chosun University

Korea became the first changed case to donor country from recipient country by joining in DAC of OECD at 2009 after graduating from recipient country in 2005. Now when 5 years have passed from the event, Kore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as been confronting many problems yet, and does not have discriminative points of Korea itself.

The study proposed cultur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 an alternative on many problems such as small-scale assistance, low assisting rate vs. gross national income, insufficient humanitarian factors on decisions for selecting focused partner countries, lacks of understanding on recipient country's culture and differentiation of Korea itself.

Culture official assistance having been alleged as an alternative in this research was suggested for comprehensive meaning on 'culture' that means understanding on the recipient country and 'cultural field' like sports, arts as conceptual bases of Kore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the study lighted up a fact that 'cultural field' could be connected to economic assistance in long term through self-esteem and consistence on their traditions together with culture sharing of the recipient country too. This study tried to step over present problems and limitations of Korea through such cultur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long-term eyesight in governmental dimensi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¹⁾의 3대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함으로써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기전략인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진행하고 있다. 원조규모는 2007년 6억 9천6백 달러, 2008년 8억 2백 달러, 2009년 8억 1천6백 달러, 2010년 11억 7천3백 달러, 2011년 13억 2천4백 달러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13위인 한국의 경제력²⁾에 비하여 원조규모는 여전히 적은 상태이며 총국민소득(GNI)과 대비하더라도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조지원 체계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커져가는 원조규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원조의 본래 목적인 인도주의적 목적³⁾보다는 경제적 이유에 의하여 선택 했다는 연구결과⁴⁾도 있다. 게다가 원조 경험의 부족으로 수원국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00년 유엔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⁵⁾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⁶⁾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협력기구이다.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3년 10월 현재,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 2) Christian Tenbrock (2012), “최단기간에 선진국 도약한 한국 - 독일 주간 <차이트> 한국 경제 특집기사 ①”, Economic Insight, 2012.08.01
- 3)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은 국가가 공적개발원조를 하는 동기를 설명하는 방법의 하나로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 등과 함께 중요한 지원동기에 속한다.
- 4) 제 3장 제 2절 참조
- 5) 유엔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국제연합에서 2000년 새천년정상회의(Millennium Summit) 개최 후 채택한 것으로, 새천년의 범지구적 문제인 빈곤의 퇴치를 포함하며 인류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규정하였음.
- 6) 장현식(2007),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의미와 우리의 향후 추진방향」, 『국제기구저널』, 제2집 제1호;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년 2월, 100개국 이상이 모인 ‘원조 효과성 관련 고위급 포럼’에서 채택한 것으로 ‘원조의 질 향상’을 위한 5개 원칙 및 동 원칙의 성과를 측정

2008 아크라 행동강령, 2011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⁷⁾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빈곤 퇴치라는 세계적 흐름을 무시할 수 없으며 수원국 시절의 보상 차원에서도 공적개발원조를 지속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나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보다 효율적·차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대안이 타 공여국과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취하는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으로 구성되며,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전체적 흐름에 대한 기술이다.

제 2장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개념을 기술하였고, 공적개발원조를 상환조건, 지원형태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많은 선진국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공적개발원조에 참여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공적개발원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현재 다수의 공여국들은 인도주의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 이해, 또는 상호의존적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그동안 받았던 원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에 참여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 3장에서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연도별 지원 금액을 살펴보고, 지역별, 분야별 지원액과 지원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위상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현황을 다른 공여국의 연도별 원조 금액, 총국민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의 지원 규모 등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하기 위한 12개의 지표(목표달성률 포함)를 설정하고, 동 목표를 2010년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7) 박은하(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국제개발협력』, 제4호; 국제개발협력단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되었던 제 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보고서로 총 36개항이다. 국제 원조정책에서 논의했던 원조효과성을 개발효과성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가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한국이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면서 어떤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지는지를 살펴보고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적합한가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화 공적개발원조’⁸⁾는 다음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 ‘문화 공적개발원조’는 스포츠, 문화시설, 예술 일만을 포함하는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와 인도적 측면에서 수원국의 수용성을 중시하는 ‘문화인지 공적개발원조’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 정의를 제시하는 이유는 한국이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나, ‘문화인지 공적개발원조’ 역시 모든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박물관 건설, 체육 프로그램 등의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만이 아니라 수원국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문화인지 공적개발원조’도 함께 중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 5장에서는 한국의 문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4개국의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원조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수치를 한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화공적개발원조가 다른 국가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전략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제 프로그램을 예시하였다.

제 6장에서는 제 1장에서 제 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간하는 국내 통계자료, 학술지, 관련 논문, 서적 등과 같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식홈페이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등, 신뢰성 있는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참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한 분석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시스템을 직접 이용하였음을 밝힌다.

8) 강주홍(2012), 「한국 문화 ODA현황과 전망」, 『한눈에 보는 유네스코 -2012 문화와 발전 라운드테이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7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화 공적개발원조는 본문에서 언급된 ‘문화인지 공적개발원조’와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로 편의상 구분하고 있으나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로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의미를 축소하지 않고 본래 2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자 했다.

제2장 공적개발원조

제1절 공적개발원조란 무엇인가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개발 격차가 사회적·정치경제적 요인들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인식 하에,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국가 혹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국제협력 사업의 일종이다. 이러한 공적개발원조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와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를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이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여국 정부가 제공하는 순수한 원조로 정의하고,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하위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고, 둘째, 주요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증여⁹⁾나 최소한의 증여율(Grant Element)이 25%이상 되는 양허성의 차관¹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수원국 목록에 등록된 국가 및 이러한 국가를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지원이나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의 제공, 사회/문화적 교류 프로그램 등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 자신을 위한 활동은 공적개발원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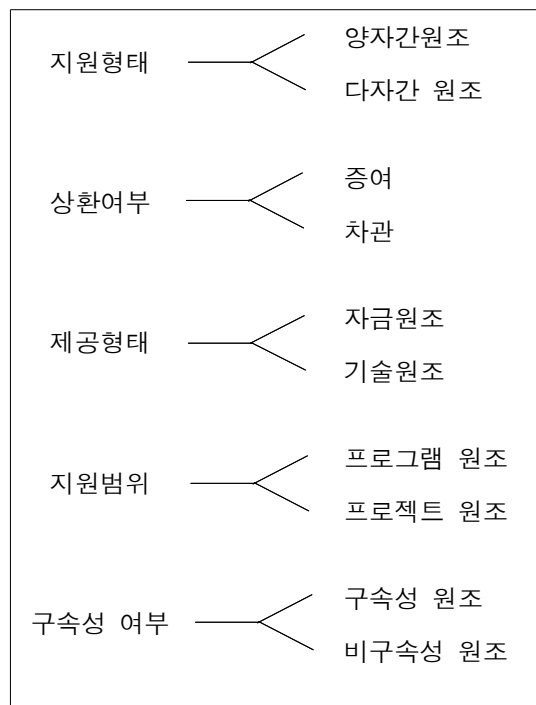
공적개발원조는 크게 다섯 가지의 형태로 그 유형을 구분 할 수 있다. 다음 장의 표를 참조하여 보면, 우선 지원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했을 경우, 수원국에 대한 지원방식이 직접적인 경우는 ‘양자간 원조’로 일컬어지며, 국제개발협회(IDA),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세계은행(IBRD),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출자 및 출연(분담금)으로 간접 지원하는 경우는 ‘다자간 원조’로 구분한다.¹²⁾ 둘째로 수원국의 상환

9) 증여(Grant): 증여는 상환조건 없이 제공되는 현금, 물자 및 서비스를 말하며, 무상원조라고 불리기도 하며 채무변제, NGO 지원, 원조사업 시행 시 수반되는 특정 비용 등도 증여에 속한다.

10)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차관은 수원국이 지원받은 현금이나 물자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상원조라고도 불리는 양허성 차관은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면에서 일반 용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이며, 특히 증여율(Grant element)이 25%를 상회할 경우 공적개발원조로 계상된다.

11) 이천우(2011), 「국제 공적개발원조의 신조류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2호, p.778

여부에 따라 ‘증여’ 혹은 ‘차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자간 원조’보다는 ‘양자간 원조’로 나타난다. 공여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법적 채무가 없는 경우, 즉 원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공적개발원조를 ‘증여’로 볼 수 있는데, 기술협력, 식량원조, 재난구호 등의 원조를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차관’은 공여된 물자나 자금을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아시아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Bank Fund) 등의 지원금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자금의 형태로 제공 하는 것을 ‘자금 원조’라고 하고, ‘자금원조’는 다시 식량원조와 같은 무상자금원조와 유상자금원조로 구분한다.



<표 1> 공적개발원조의 유형과 분류기준

원조 제공을 기술의 형태로 했을 경우 ‘기술원조’라고 하는데,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 및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개발을 위한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수원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강

12) 유웅조(2011),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9집 1호, p.36

조되고 있다. 넷째, 공적개발원조의 지원범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프로그램 원조’는 수원국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거시적 의미에서의 지원이며, ‘프로젝트 원조’는 특정사업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지원책이다.¹³⁾ 마지막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구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구속성 원조(Tied Aid)’란 공여국이 원조의 사용방법이나 조건을 지정하거나 공여 지역을 특정한 국가로 제한하는 원조를 지칭한다. 반대로 이러한 제한이 없는 원조를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라고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공적개발원조의 조건이 모든 물자나 자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분구속성 원조(Partially Tied Aid)’를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¹⁴⁾

제2절 공적개발원조 결정요인¹⁵⁾

각국이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3가지 이외에도 새로운 결정요인으로 상호의존적 이유가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4가지의 결정요인 이외에도 한국의 경우처럼 도덕적인 이유도 공적개발원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공적개발원조는 인도주의적인 이유에서 필요하다. 오늘날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풍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까지도 심각한 빈곤에 직면해 있다. 국가 간, 대륙 간, 빈부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약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연 재해, 절대 빈곤, 전쟁과 테러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선진국들도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의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돕는 것을 인도적 측면에서 의무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이유는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적 동기이자 목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족 분쟁이나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에 대해 각국의 인도적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둘째로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선진국들은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 하에서 공산화 방지 및 국제질서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13) 김상태, 윤지용, 김영곤(2013),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정부학연구』, 제19권 제1호, pp.128-129

14) 유응조(2011), *op.cit.*, p.37

15)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devco.go.kr>)

달성하기 위해서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했다. 정치·외교적인 동기에 의한 대표적인 원조 사례로 서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마샬플랜(Marshall plan)¹⁶⁾을 들 수 있다. 한국도 중국과 북한의 공산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과거 서방국가들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다. 또한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2차 대전의 전범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소시키고자 원조를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국가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전략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치·외교적 동기에 의한 원조는 강대국에 의한 원조의 특징이기도 하다.

셋째로, 경제적 동기의 원조는 경제발전을 통한 이해관계에서 시작되었다. 논리는 이렇다. 공여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여국의 경제가 발전하게 될 것이며,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수출시장이 확대되면 이를 통해 공여국 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직·간접적으로 수원국에 대한 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중국, 동남아시아 등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 가운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적개발원조로 인한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이 공여국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들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개발원조를 결정하는 등, 경제적 동기는 공적개발원조를 결정하는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여국은 자국물품 및 용역으로 한정된 원조를 실시하여 수출을 촉진시키는 구속성 원조를 통해 자국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¹⁷⁾가 많다.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수출시장 및 투자지역의 확대라는 커다란 이익을 일본에 가져다주었는데,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발전은 일본의 공적개발원조가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다.¹⁸⁾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식은 결과적으로 수원국 경제발전을 왜곡시키고 원조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이 알려지게 되면서 최근의 공여국들은 이런 관행을 지양하는 추세다.

위의 3가지 이유가 현재까지 공적개발원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면 최근에

16)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행한 대규모 재정지원에 대한 대외원조계획으로 본래 유럽 부흥계획이나,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1947년 처음으로 공식제안 하여 그의 이름을 따 ‘마셜 플랜’이라고 하였으며 본래 유럽 전체국가를 대상으로는 하였으나 일정 조건을 단서로 하여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배제하였다.

17) 이선재(2010),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슬픈 원조」, ODA WATCH 42호; 한국에서 라오스에 원조했던 ‘루앙프라방 국립대학교 건립’의 경우 건립 조건으로 대학교 내 물품 등 모든 기자재를 한국에서 공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에서 구입한 기자재들이 라오스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솜으로 덧댄 의자 등이 공수되었으나 더운 기후와 맞지 않아 솜을 뜯어 사용하고 이후 수리 문제와 연결되기도 하였다.

18) 하영수(2005), 「일본 ODA의 문화협력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2집 3호, p.268

는 상호의존적 필요성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공적개발원조의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정보교환과 인적교류가 많아지면서 국가·지역 간 연관성이 높아지는 상호의존적으로 변화되었다.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파괴, 자원고갈, 인구증가, 테러, 난민발생, 에이즈(ADI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여성문제, 전후 복구지원 등 범지구적 문제(global issue)는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 국가에 국한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세계평화와 안정유지에 직결된 범지구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되지 않고서는 선진국의 번영과 안정도 지속될 수 없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와 질병확산 등은 선진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은 미국 9.11테러나 선진국으로의 난민유입 등, 안보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이렇게 변화된 지구촌 환경 속에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을 자국 제품의 수출시장 및 원료공급원이라는 경제적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자로 인식을 전환하게 되었다. 공여국이 수원국을 상호의존적인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만이 갖는 특징적 요인으로는 도덕적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 1953년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¹⁹⁾이 67달러로, 필리핀보다 더 가난한 최빈국에 속해 있었다. 일본의 지배를 받는 동안 대일본 무역의존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경제구조와 생산체제가 함께 붕괴되어 있었고 해방 직후 미군정 수립으로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침체에 빠져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1947년 미국에 의해 제공된 장기저리차관을 시작으로 수원국이 되었다. 이후 1950년대 초에는 전시 긴급 구호 성격을 띤 원조와 함께 1950년대 말까지 전쟁복구 및 경제재건을 위한 원조를 받았다.²⁰⁾ 1960년대는 박정희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맞물려 121억 3백 달러의 원조를 받았으며, 1970년대에는 123억 9천7백 달러, 1980년대에는 11억 5천7백 달러를 추가로 제공받았다.²¹⁾ 이렇게 한국은 1972년까지 수

19) GNI(Gross National Income) : 국민총소득,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로서,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이다.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영토 안에서의 소득을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국민총소득과는 구분된다.

20) 홍성걸(2011), 『ODA리포트-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오래, pp.33-62

21) OECD(<http://www.oecd.org/dac/stats/idsonline.htm>):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Online DB

원국 순위 5위 내에 속하는 대규모 수원국이었고, 이러한 공적개발원조는 현재 한국이 이룬 경제성장의 주춧돌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원조를 받아 성장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보답해야 할 일종의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과거의 원조에 대한 보답적인 측면에서도 원조를 공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및 빈곤국가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적개발원조라는 개념이 본래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이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여국 정부가 제공하는 순수한 원조’라고 정의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가 없는 원조가 가장 본질적인 공적개발원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원조를 공여하는 측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이다.

제3장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제1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1. 수치로 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해방 이후 1990년 후반까지 해외로부터 약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받는 원조 수원국이었으나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과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 설립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원조공여를 시작하였다. 이후 원조규모가 확대되어 1995년²²⁾에 1억 1천 달러였던 대외 원조규모가 2000년에 2억 1천2백 달러, 2009년에는 8억 1천6백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이윽고 한국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공식적인 원조 공여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신흥 원조 공여국(emerging donor)으로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점차 증대시켰다.²³⁾

구분	공여실적(백만 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공적개발원조 총계	365	423	752	455	696	802	816	1,173	1,324	1,578
양자간 원조	245	660	463	376	490	539	581	900	989	1169
무상원조	145	212	318	258	358	368	366	573	575	701
유상원조	99	118	145	117	132	170	214	326	414	468
다자간 원조	120	92	289	79	205	263	234	273	335	409

<표 2>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공여실적(순지출 기준)

위의 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공여실적으로, 2006년 4억 5천5백 달러에서 2012년 15억 7천8백 달러까지 공여실적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확인

22)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됨으로써 사실상 수원대상국에서 빠져나오게 됨.

23) 한국교류협력단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할 수 있다.²⁴⁾ 특히 양자간 원조가 2004년에서 2012년까지 약 2배로 증가되었으며 양자간 원조 대 다자간 원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70~75%:30~25%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확정통계 기준으로 보다 자세한 현황을 살펴보면,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0.2%가 증가한 반면 유상원조는 전년도 대비 26.9% 증가하였고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비율은 약 60%:40%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무상원조는 2011년 기준으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70.4%를 지원하였는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지역재건 관련 자금 배분이 축소됨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양자간 원조 중 63.2%가 아시아지역 국가에 지원했으며 아프리카(18.0%), 중남미(6.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국가별로는 베트남(2010년도 최대 수원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양자간 원조의 14.0%(무상협력의 5.2%, 양허성차관의 26.4%)를 차지하였다. 분야별로는 교육

순위	국가	양자간 원조	무상원조	유상원조	(비중,%)
1	베트남	139.5	30.1	109.4	14.0
2	방글라데시	80.0	9.2	70.8	8.1
3	캄보디아	62.2	23.1	39.1	6.3
4	스리랑카	43.4	11.5	31.9	4.4
5	필리핀	35.7	25.8	9.9	3.6
6	라오스	33.5	15.5	18.0	3.4
7	몽골	30.5	32.6	2.1	3.1
8	요르단	29.3	2.4	26.9	3.0
9	아프가니스탄	28.0	28.0	-	2.8
20	인도네시아	24.3	17.9	6.4	2.5
전체 양자간 원조		989.6	575.0	414.6	100

<표 3> 2011년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의 주요 국가별 지원 규모
(순지출, 미국백만달러)

분야와 수자원·위생분야를 포함하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42.9%)와 교통, 에너지, 통신 등을 포함하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36.8%)에 대한 지원이 전체 양

24) KOICA(2013), 『2012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p.114

자간 공적개발원조의 79.7%를 차지하였다. 소득 그룹별로는 양자간 원조의 37.7%가 하위중소득국, 35.0%가 최빈개도국(2010년에 비해 2% 감소)에 지원하였으며 최대수원국인 베트남이 기타 저소득국²⁵⁾에서 하위 중소득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하위중소득국 지원비중이 2010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다자간 원조의 경우, 3억 3천 5백 달러를 세계은행그룹, 지역개발 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연합기구에 지원하였다.

비구속성 원조는 51.1%로 2010년 대비 15.4% 증가하였는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구속성 원조 대부분이 대폭 감소된 것에 따른 것이며 비구속성 원조 금액은 41억 6천 달러로 증여가 23%를 차지하는데 비해 차관이 77%를 차지하였다.²⁶⁾ 즉 비구속성 원조가 51%를 차지하기는 하나 상환해야 하는 원조를 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무상원조의 70%를 지원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한국국제협력단은 분야별로 2011년에는 교육 24.5%, 공공행정 16.9%, 보건 13.7%의 비율로 원조를 제공해 왔으며 사업유형별로는 47.2%가 프로젝트, 17.5%가 봉사단 파견으로 사용되었다.²⁷⁾ 수원규모 상위 5개국으로는 몽골,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으로 2011년도와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²⁸⁾ 즉 한국의 무상원조가 프로젝트 중심이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부의 정책과 조직체계

앞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수치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는 공적개발원조의 단면을 파악해 보았다면, 본문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으며 원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02 로마 선언, 2005 파리 선언, 2008 아크라 행동 강령, 2011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등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발협력 수행에 필요한 국내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준하는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10월에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²⁹⁾ 2010년 7

25)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서는 공적개발원조 적격 협력 대상국을 4등급으로 분류하며 최빈국, 기타 저소득국, 하위 중소득국, 상위 중소득국이 이에 포함된다.

26) 대외경제협력기금(2011), 「2011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주요내용」, 경협기획실, pp.5-6

27) KOICA(2012), 『2011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p.18

28) KOICA(2013), *op.cit.*, p.14

월에 수립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전략³⁰⁾에 따라 국가별 협력전략(CPS)의 일환으로 26개의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표 4 참조)

지 역	국 가
아시아(13개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8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동아메리카(4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기타(1개국)	솔로몬군도

<표 4>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중점 지원국가 현황

현재 한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를 총괄 및 조정기구, 주관기관, 시행기관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총괄 및 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정책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2010년 1월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장 및 3개 과(개발협력기획과, 대외협력과, 개발협력지원과), 총 12명으로 구성된 개발협력정책관실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였다.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은 다음 장의 <표 5>를 이용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이들은 각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집행하는 시행기관의 역할을 한다. 이 밖에 다자간 공적개발원조,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외교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이나 출자는 한국은행

2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ODA 통합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동시에 'ODA 선진화 전략',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을 비롯하여 '국가협력전략 (CPS : Count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였다.

30) 관계부처합동(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pp.28-31 :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중장기 추진 전략을 위해 2010년에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전략은 '협력대상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이라는 세 가지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 ODA 선진화 전략의 주요 이행방안으로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국제 활동 참여 강화'를 설정하여 한국 ODA의 질적 향상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 담당하고 있다.³¹⁾ 하지만 이들 기관은 상호협의 및 조정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관들 간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³²⁾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 등의 공적개발원조 역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상호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분류	상환조건	원조형태	실시기관	주무부처
양자간	증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예산지원, 부채경감, 식량원조, 긴급지원 및 고통경감, NGO에 대한 지원,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부금, 개발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기금, 행정비용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비증여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간	국제기구 분담금 : 국제연합 등		외교부	외교부
	국제기구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표 5>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형태 및 집행체제

제2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과 한계

1.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과의 차이

국가	공여실적(백만 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365	423	752	455	696	802	816	1,173	1,324
호주	1,219	1,460	1,680	2,123	2,669	2,954	2,762	3,826	4,983
오스트리아	505	678	1,573	1,498	1,808	1,714	1,142	1,208	1,111

31) 유웅조(2011), *op.cit.*, pp.38-39

32) 강영문(2013), 「한국의 아세안 ODA와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4권 2호, p.256

벨기에	1,853	1,463	1,963	1,987	1,951	2,386	2,610	3,003	2,807
캐나다	2,031	2,599	3,756	3,684	4,080	4,785	4,000	5,201	5,457
덴마크	1,748	2,037	2,109	2,236	2,562	2,803	2,810	2,871	2,931
핀란드	558	680	902	834	981	1,166	1,290	1,333	1,406
프랑스	7,253	8,473	10,026	10,601	9,884	10,908	12,600	12,915	12,997
독일	6,784	7,534	10,082	10,435	12,291	13,981	12,079	12,985	14,093
그리스	362	321	384	424	501	703	607	508	425
아일랜드	504	607	719	1,022	1,192	1,328	1,006	895	914
이탈리아	2,443	2,462	5,091	3,641	3,971	4,861	3,297	2,996	4,326
일본	8,880	8,922	13,126	11,136	7,679	9,579	9,469	11,054	10,831
룩셈부르크	194	236	256	291	376	415	415	403	409
네덜란드	3,972	4,204	5,115	5,452	6,224	6,993	6,426	6,357	6,344
뉴질랜드	165	212	274	259	320	348	309	342	424
노르웨이	2,042	2,199	2,786	2,954	3,728	3,963	4,086	4,579	4,934
포르투갈	320	1,031	377	396	471	620	513	649	708
스페인	1,961	2,437	3,018	3,814	5,140	6,867	6,584	5,949	4,173
스웨덴	2,400	2,722	3,363	3,955	4,339	4,732	4,548	4,533	5,603
스위스	1,299	1,545	1,772	1,646	1,685	2,038	2,310	2,300	3,076
영국	6,262	7,905	10,772	12,459	9,849	11,500	11,491	13,053	13,832
미국	16,320	19,705	27,935	23,532	21,787	26,842	28,831	30,353	30,924
총계	69,065	79,432	107,078	104,370	103,485	121,483	119,185	128,492	134,038

<표 6>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 공여실적(순지출 기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위의 <표 6>³³⁾을 통해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공여실적(순지출 기준)을 비교해 보자. 한국의 공여실적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3억 2천4백 달러로 23개국 중에서 17위로 하위권을

33)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2013), 『숫자로 보는 ODA -2013 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pp.68-69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다국가 소규모 원조 제공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다른 선진 공여국에 비해 원조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원국 입장에서든 수원국 예산담당자가 원조를 제공하는 수많은 공여국들의 상이한 국가별 예산 기록과 분류방식에 대한 기록을 서로 일치시키고 비교 가능하도록 가공하기 위해서 상당한 행정적 비용을 소요하게 되므로 반갑지 않다.³⁴⁾ 이러한 행정적 부담은 결국 수원국의 행정효율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수원국 정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다음의 <표 7>³⁶⁾을 살펴보면 총국민소득 대비 원조 구성비를 살펴 볼 수 있는데 표의 우측

(단위 : %)

국가	총국민소득 ³⁵⁾ 대비 구성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한민국	0.06	0.06	0.10	0.05	0.07	0.09	0.10	0.12	0.12	
호주	0.25	0.25	0.25	0.3	0.32	0.32	0.29	0.32	0.34	
오스트리아	0.2	0.23	0.52	0.47	0.5	0.43	0.3	0.32	0.27	
벨기에	0.6	0.41	0.53	0.5	0.43	0.48	0.55	0.64	0.54	
캐나다	0.24	0.27	0.34	0.29	0.29	0.32	0.3	0.34	0.32	
덴마크	0.84	0.85	0.81	0.8	0.81	0.82	0.88	0.91	0.85	
핀란드	0.35	0.37	0.46	0.4	0.39	0.44	0.54	0.55	0.53	
프랑스	0.4	0.41	0.47	0.47	0.38	0.39	0.47	0.5	0.46	
독일	0.28	0.28	0.36	0.36	0.37	0.38	0.35	0.39	0.39	
그리스	0.21	0.16	0.17	0.17	0.16	0.21	0.19	0.17	0.15	
아일랜드	0.39	0.39	0.42	0.54	0.55	0.59	0.54	0.52	0.51	
이탈리아	0.17	0.15	0.29	0.2	0.19	0.22	0.16	0.15	0.2	
일본	0.2	0.19	0.28	0.25	0.17	0.19	0.18	0.2	0.18	
룩셈부르크	0.86	0.79	0.79	0.9	0.92	0.97	1.04	1.05	0.97	

34) 조이슬(2013), 「우리는 왜 원조투명성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 2013 제 10회 ODA 정책포럼」, ODA WATCH 뉴스레터 84호, 2013.12.03; ODA

WATCH(http://www.odawatch.net/?document_srl=38802&mid=articlesth)

35) OECD(<http://www.oecd.org/dac/stats/idsonline.htm>), *op.cit.*

36)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2013), *op.cit.*, pp.68-69

네덜란드	0.8	0.73	0.82	0.81	0.81	0.8	0.82	0.81	0.75
뉴질랜드	0.23	0.23	0.27	0.27	0.27	0.3	0.28	0.26	0.28
노르웨이	0.92	0.87	0.94	0.89	0.95	0.88	1.06	1.1	1
포르투갈	0.22	0.63	0.21	0.21	0.22	0.27	0.23	0.29	0.31
스페인	0.23	0.24	0.27	0.32	0.37	0.45	0.46	0.43	0.29
스웨덴	0.79	0.78	0.94	1.02	0.93	0.98	1.12	0.97	1.02
스위스	0.37	0.4	0.44	0.39	0.38	0.42	0.45	0.4	0.45
영국	0.34	0.36	0.47	0.51	0.35	0.43	0.52	0.57	0.56
미국	0.15	0.17	0.23	0.18	0.16	0.19	0.21	0.21	0.2
총계	0.25	0.26	0.33	0.31	0.28	0.31	0.31	0.32	0.31

<표 7>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총국민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구성비

하단에 위치한 공여국의 평균 구성비는 2011년도를 기준으로 0.31을 가리키고 있으나 한국은 0.12를 가리키고 있다. 위의 표에서 생략된 2012년도 한국의 구성비는 0.15로 2011년도의 0.12에 비하여 0.03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공여국의 2011년 평균 0.31에 비하면 절반이 되지 못하는 수치이며 국제연합이 권고하는 공적개발원조/국민총소득 비율 0.7%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곧 다른 공여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총국민소득에 비해 공적개발원조액이 적다는 뜻이다. 결국 한국은 공유실적 측면에서도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총국민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구성비 측면에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무상 대 유상의 비율이 평균 60:40으로 나타나 서구 선진국가들이 100% 무상원조체계를 추구하는 점과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무상원조 비율이 88.6%임을 감안할 때 현저하게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 인도주의적 결정요인의 미흡과 신생공여국의 한계

제 2장 제 2절에서 다루었듯이,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과 같은 인도주의적 목표를 원칙으로 하지만, 많은 공여국들이 실제로는 정치·외교적 이유, 경제적인 이유, 상호의존적 이유 등,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 중 미국은 정치·외교적인 필요성과 인도주의적 목적에 의한 공적개발원조의 성격을 띠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일본은 경제적 목적을 위주로 하는 국가이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역사적 배경에 따른 과거의 식민 통치 국가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필요성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각국의 원조 목적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³⁷⁾

이제 다음의 두 가지 선행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협력국가 선정³⁸⁾이 어떠한 결정요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김상태, 윤지웅, 김영곤의 연구(2013)³⁹⁾는 중점협력국가로 선정된 26개 국가에 대해 정치·외교적 동기, 경제적 동기, 인도주의적 동기를 도출하여 한국이 어떤 결정요인을 중시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들은 먼저 정치·외교적 동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상호방위 조약 체결여부를 변수로 삼았다. 이는 한국이 유일하게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며, 이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인가, 아니면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인가에 따라 중점협력국가의 선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김상태 연구팀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동기를 중시하여 협력국가를 선정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교역량을 통해서 측정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수원국과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을 첫 번째 변수로 설정했다. 경제적 동기에 대한 또 다른 변수로는 대상국의 경제적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과 '국민총소득'을 정하여 두 지표가 높을수록 한국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교역량과 수원국의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이 높을수록 협력국가로 선정 되었을 것이라는 또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대부분의 공여국들이 수원국의 인권수준을 고려하여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⁴⁰⁾과 더불어 소득수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⁴¹⁾을 한

37) 김선근(1997),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개방향」, 『정책연구』, 97-16, STEPI

38) 협력국가 선정 기준에 대한 정부에서 내용은 별도의 공식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선정된 국가를 중심으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선정하였는가에 대해 선행된 연구를 참고하였다.

39) 김상태, 윤지웅, 김영곤(2013), *op.cit.*, pp.125-153

40) Cingranelli, D.L., & T.E., Pasquarello(1985), "Human Right Practices and the U.S. Distribution of Foreign Aid to Latin American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3), pp.539-563

41) Alesina, A. & D. Dollar(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국이 인식하고, 이러한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한국이 중점협력국가를 선택했다면 이것은 대상국의 빈곤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내총소득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팀이 1인당 국내총소득을 변수로 정한 이유는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선진 유럽 복지국가의 1인당 국내총소득이 인도주의적 지원 동기로 뚜렷하게 관찰되었기 때문이다.⁴²⁾ Lebovic⁴³⁾의 연구에서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서구 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에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대상국의 인권수준을 결정하는 정치적 테러 위험수준 지표이다. 따라서 1인당 국내총소득이 낮고 정치적 테러 위험수준 지표가 높은 국가에 더 많은 지원을 했다면 이는 한국이 인도주의적 요인을 중심으로 지원 국가를 선정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연구자들은 위의 가정들을 프로비트 모형(probit model)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중점협력국 26개국은 정치·외교적 동기인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여부가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정치·외교·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공적개발원조 지원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동기 중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이 중점협력국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나타났지만 대상국과의 교역량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수원국과의 직접적인 무역량 보다는 잠재적 미래의 경제협력자를 중점협력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국에 대한 한국의 인도주의적 동기를 분석하면, 대상국의 빈곤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상국의 인권수준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8>⁴⁴⁾에서 나타나듯이 김상태, 윤지웅, 김영곤의 연구(2013)는 위의 가설과 분석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외교안보적 측면, 인도주의적 동기 및 경제적 협력요인 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요소가 다소 고려되고 있기는 하

Growth, 5:33-63

42) Gates, S. & A Hoeffler(2004), *Global Aid Allocation:Are Nordic Donors Different?*, CASE WPS/2004-34

43) Lebovic, J. H.(2005), "Donor Positioning: Development Assistance from the U.S., Japan, France, Germany, and Britai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58(1):119-126

44) 김상태, 윤지웅, 김영곤(2013), *op.cit.*, p.147

결정요인	가설	내용	채택여부
정치·외교적 동기	가설1	우리나라와 정치·외교적으로 근접할수록 중점협력국가로 선정되었을 것이다.	채택
	가설1-1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있어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여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채택
경제적 동기	가설2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 가능성이 높을수록 중점협력국가로 선정되었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2-1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있어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기각
	가설2-2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있어 수원국의 국내총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채택
	가설2-3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있어 수원국의 국민총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채택
인도주의적 동기	가설3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있어 인도주의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3-1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있어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소득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채택
	가설3-2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있어 수원국의 인권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기각

<표 8>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설 및 채택여부

지만 대상국의 빈곤수준에 국한하고 있으며, 하위중소득국인 베트남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국가 선정에서 인도주의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타당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든다. 실제로 국제연합이 규정하고 있는 최빈국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이 950달러 이하인 나라들로, 2011년 기준 앙골라 등 아프리카 33개 국가와 라오스 등 아시아 14개 국가 및 아메리카 지역의 아이티 등 모두 48개 나라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가로 선정한 26개 국가 중 최빈국은 국제연합이 지정한 국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

개국이다.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Peer Review 2012 of Korea,⁴⁵⁾에서는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문제점으로 최빈국에 대한 높은 유상원조 비율을 지적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빈국에 대해 대외상환능력을 악화시키는 유상원조를 중단하고 무상원조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서 세계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에 각각 약 3,200억원과 2,200억원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 중이다.⁴⁶⁾

2013년 11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4년차 사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양자 원조 지원 상위 5개국은 모두 아시아권 국가로 특히 베트남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 지원 비중은 63.2%에 달했다. 다음으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⁴⁷⁾이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들에 원조가 집중된 이유는 가까운 거리,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량 증가, 큰 인프라 구축수요, 한국 개발 경험 적용의 용이함 등이 꼽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는 51.1%로 개발원조위원회의 24개 회원국 중 22위로 회원국의 평균 비율 83.5%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러한 구속성 원조가 지속될 경우 지원 대상 국가, 즉 수원국의 빈곤퇴치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⁴⁸⁾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과연 빈곤퇴치라는 인도주의적 요인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그 까닭은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정신이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⁹⁾ 따라서 과도한 국익 중심의 공적개발원조는 국제사회에서 역기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가치가 지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갖는 또 다른 한계는 한국이 신생 공여국이라는 점이다. 신생 공

45) KOICA(2011), 『국제개발협력』, 제3호 :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입이후 처음으로 실시했던 동료검토로 6월에 실사단이 방문하였으며, 동료검토는 선진 공여국들의 개발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빈곤퇴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원조위원회의 설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의 하나로 회원국들간에 상호 검토하는 장치를 통해 회원국들이 서로의 원조 특성과 성공, 실패사례를 확인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서 원조성과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46) 한국수출입은행(2013),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통계』, p.33

47) 참고연구에서는 실제 가입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앞에서 밝힌 2011년 상위규모 수원국의 리스트와 동일성을 위해 필리핀으로 교체함

48) 김신(2013), “우리나라 공적개발 원조사업, 아시아 국가 편중”,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12920)

49)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go.kr)

여국이 갖는 가장 큰 한계는 경험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노하우의 부족이다. 국가 간의 교류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갈등 중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특히 파급력이 크다. 그러한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일방적인 원조를 받게 될 경우, 수원국은 자긍심을 훼손하게 되며 심할 경우에는 원조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 저항할 수도 있다.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원조⁵⁰⁾의 예로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호주정부의 정책을 들 수 있다. 호주정부는 원주민(Aborigine)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원조가 아닌, 서구적 행정제도와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생계비 지원과 단기적이고 비발견적인 행태의 지원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받아들인 원주민들은 그들의 문화를 잃어버린 채 새로운 호주라는 국가의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플레이 펌프(play pump)’가 있다. 플레이 펌프는 한국에서 지원했던 시스템으로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돌리면서 놀면 그것이 동력이 되어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끌어올려진 지하수가 물탱크에 저장되는 원리로 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여성과 아이들이 몇 시간 동안 마실 물을 길러 먼 길까지 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깨끗한 물을 얻음으로써 보건위생 전반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획기적인 지원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2005년 한 방송을 통해 ‘플레이 펌프’가 알려지면서 연예인과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아프리카 10여 개국으로 보급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플레이 펌프는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폐시설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플레이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명의 아이가 필요했고 노약자나 여성이 홀로 돌리기에는 너무 무거웠으며 오히려 손펌프로 물을 끌어올렸을 때보다 적은 양의 물을 얻게 된다는 실험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⁵¹⁾ 또한 플레이 펌프는 고장이 잦은 반면에 사전에 지역민들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되고 소통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작 고장 났을 때에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쳐달라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이렇듯 수원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방향의 원조를 제공할 경우에 원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감소하게 되고 오히려 원조에 대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원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원조를 해야만 한다. 특히 수원국에서 원조받고자 하는 것은 최첨단 기술이 아닌, 그들의 비용과 지적 능력, 환경 등에서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임을 생각해 볼 때 공여국은 지원에 앞

50) 국가간의 공적개발원조의 형태는 아니나, 타문화에 대한 이해 없는 도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자 사례로 들.

51) 김정태, 김주현 외 3명 (2012), 『인간중심의 기술, 적정기술과의 만남』, 에이지21, pp.60-91

서 수원국에 대한 이해를 선행해야 한다. 수원국의 국민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적정기술원조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마을과 국가에 효율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이러한 단계에 도달해 있지 못하고 여전히 수원국에 대한 단기적·양적 지원을 통해 공여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치중하고 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문제는 차별성의 부족이다. 앞에서 밝힌 신생 공여국이라는 한국의 한계는 수원국에 대한 이해부족과 더불어 선진 공여국의 잘못된 선례를 답습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원조규모는 해마다 커져가고 있으나 한국만의 차별화된 정책은 눈에 띄지 않아 오히려 규모에 비해 비효율적인 원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낭비라는 질책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가별 협력전략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력을 통한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비교우위가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여국이 수원국보다 전체적인 기술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공여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이 반드시 수원국에게 필요한 기술인지의 여부는 명쾌하게 답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타 공여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 중 하나가 정보통신 기술인데, 실제로 이를 공적개발원조에 적용하여 컴퓨터와 컴퓨터 교육 인력을 지원해준다고 할지라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앞의 글에서 밝힌 적정기술의 중요성으로도 연결되지만, 그만큼 차별성으로 내세울 게 없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제4장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선진공여국과 비교했을 때 소규모 원조와 총국민소득 대비 낮은 공여 비율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원규모의 문제로 세금으로 충당되는 원조금액을 당장에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원조하고 있는 금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옮겨가게 된다. 원조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에 대한 이해, 즉 수원국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며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이러한 절차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최빈국에 대한 낮은 원조 비율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인도주의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상위 5개국 중 하나이자 유일한 최빈국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가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따라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인도주의적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수원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효율적인 공적개발원조를 추구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가치

본 절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화 공적개발원조’라는 단어를 본 연구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여 한국의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문화 공적개발원조’는 ‘문화적 공적개발원조’, ‘문화교류 공적개발원조’ 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는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와 ‘문화인지 공적개발원조’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먼저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란 예술, 관광, 스포츠 등 직접적인 문화의 한 영역을 활용한 사업을 말한다. 반면 ‘문화인지 공적개발원조’는 문화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개발도상국 주민의 감성과 자긍심 그리고 고유문화를 존중하며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규범적 측면의 공적개발원조를 나타내는 단어이다.⁵²⁾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를 대체하는 단어로 혼용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화인

문화 공적개발원조

≠ 문화적 공적개발원조
문화교류 공적개발원조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 문화인지 공적개발원조

모든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개발도상국주민의
감성과 자긍심,
고유문화를 존중하며
발전을 추구해야 함

예술, 관광, 스포츠 등
문화영역 활용사업

실문화분야

문화적관점

<표 9>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의미

지 공적개발원조'의 개념 역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위의 두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 어휘로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은 문화다양성을 인류발전의 근간이고 인류발전의 중요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으로 발전하였는데, 이 협약은 문화적 자산과 서비스가 정체성, 가치, 의미를 담당하는 것으로 단순한 소비재가 아님을 알렸고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문화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이후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⁵²⁾는 2008년 '세계 언어의 해', 2009년 '문화 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 보고서 발간, 2010년 '문화 간 화해의 해' 등을 추진하여 문화와 발전이 분리될 수 없음을 알리고 문화를 통해서 사회발전을 재구상하는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유엔총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적으로 문화와 발전에 관한 의제를 상정하여 총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유엔 결의안에서는 지속가능 발전과 국가 개발목표,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의 기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문화가 주민들의 혁신과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52) 강주홍(2012), *op.cit.*, p.76

53)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전문기구다. 이름은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e Organization)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2014년 현재 195개 정회원국과 9개 준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⁴⁾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인류사회의 발전과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세계사적 흐름은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가치를 설명하는 좋은 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빈부격차, 분쟁이 심화되면서 포용적 발전이 중요한 정책 담론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발전과정과 발전의 성과가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를 위한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포용적 발전은 소수자와 소수민족, 주변화 된 계층과 빈곤층 및 여성이 발전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의 혜택이 이들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포용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매개로 하는 문화적 접근과 문화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에서 배제된 계층과 소외된 자들은 토지 소유권, 개발권 등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화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⁵⁵⁾ 이렇듯 문화를 활용한 지원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가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문화 공적개발원조는 단방향적인 원조에서 비롯되는 역효과를 해소 할 수 있다. 원조 과정 중 원조행위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의 티베트⁵⁶⁾ 원조의 경우가 그렇다. 티베트는 중국의 청장철도 건설 등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티베트 반중국시위에서 보듯이 여전히 중국의 지배를 반기고 있지 않다. 이는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인도주의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켜 경계심만 키우는 모양이 되었다.⁵⁷⁾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 저항은 오늘날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원국들은 공적개발원조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전통적인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저항하거나 원조를 과감히 포기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원조를 진행함으로써 일방적인 공적개발원조의 역효과를 ‘문화 공적개발

54) 이태주(2013),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흐름과 향후과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pp.104-105

55) *Ibid.*, p.102

56) 중국 남서부에 위치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서장자치구라고 부른다. 1959년 이후 대규모 민족운동이 발생한 이후 독립된 국가로서 티베트를 세우려 하여 중국정부와 대립상태에 있다.

원조'를 통해 예방해야만 한다.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다른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형태에 비해 계획대로 수행이 되었을 경우, 개도국과 정서적 우호관계가 형성되어 추후 쌍방향적인 문화교류의 파트너로 동반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협력자로서 신뢰 구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장기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빈곤의 퇴치'라는 공적개발원조의 기본목표를 염두했을 때 문화 공적개발원조는 사회문화적 빈곤의 영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사회문화적 빈곤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통해서 이러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 원조 프로그램 중 수원국의 고유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보호 및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수원국 주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발굴한 고유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유통채널과 교류채널을 형성하는데 지원이 가능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수원국 주민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 세계시민들에게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문화다양성까지도 증진시킬 수 있다. 문화라는 영역이 정치적 상황이나 외부환경과 무관하게 창조적인 생산이 가능한 사업인 만큼 수원국에서 발굴한 콘텐츠의 활용 및 관련 교육을 수원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수원국의 창조산업 기반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원국의 경제적 부가치를 창출시켜 사회문화적 빈곤의 퇴치가 경제적 빈곤퇴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실용적인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제2절 한국의 문화 공적개발원조 가능성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지닌 여러 가치는 충분히 매력적이나 중요한 것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한국의 문화 공적개발원조 가능성을 '문화인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가능성과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문화인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자. 문화인지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과의 공감과 수원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시 한다고 앞장에서 기술하였다. 한국은 2005년 수원국을 벗어났음은 물론 2009년 12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됨으로써 공여국이 되었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

환된 첫 번째 국가로서 한국은 단기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공여국으로서도 개도국의 관심 대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한국을 발전경험과 발전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공여국이자 동시에 수원국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수원국들과 정서적 교감할 수 있는 국가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단일민족에서 다인종국가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문화, 다문화,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통해서 국내 이주민들의 모국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내부의 사회통합을 이끌고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공적개발원조와 연계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 영국과 같이 식민지 통치를 했던 국가들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는 국가이다. 오히려 필리핀과 같이 피식민지 상태를 경험했던 국가들만이 알 수 있는 경험을 공유했던 나라로서 정신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거부감 없는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1990년대 말 부터 아시아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 등 한국 대중문화의 보급은 수원국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나 지식을 높임으로써 문화적 교감을 이끌어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친밀감은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하는 데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의 TV프로그램, 영화의 제공이 바로 그러한 예인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콘텐츠 수출을 목적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수원국 국민들이 문화⁵⁸⁾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원조라고 볼 수 있다.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은 현재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과 같은 관련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비용과 인력 투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의 지역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한류의 확산으로 야기될 수 있는, 예컨대 이웃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문화 침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문화교류를 보다 강화하려는 동기에서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한국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서, 아시아 네트워크 교류의 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의 균형 잡힌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⁵⁹⁾ 주관기관으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극장,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있다. 실제 운영했던 프로그램으로는 각국의 탈 관련

58)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란 한국문화, 동양문화처럼 생활양식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아니라 문화생활, 여가생활의 의미가 강하다.

59) 홍기원(2008), 「‘국제교류’의 다리 놓기 : 문화동반자사업의 성과와 전망」,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 329호, pp.82-91; 문화동반자사업 홈페이지(<http://www.culturefriends.or.kr>)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국의 탈춤 공연을 교환했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해외도서관 사서 연수프로그램’이 있다. 이 사업은 문화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에서 차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DAC 분류	분야코드		DAC 분류	분야코드	분야(한글)
사회하부구조 및 서비스	10000~	➔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16000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	14000~			16010	사회/복지 서비스
생산분야	30000~			16020	고용정책 및 행정관리
다부문	40000~			16030	주택정책 및 행정관리
일반프로그램 지원	50000~			16040	저비용 주택개발
인도적 지원	70000~			16050	기초 사회서비스 부문 다부문 원조
행정비용	91000~			16061	문화 및 레크레이션
NGO 지원	32000~			16062	통계능력 강화
비배분/비특정	99800~			16063	마약 관리
부채관련 지원	60000~			16330	AIDS사회적영향완화

<표 10> DAC 원조목적코드 전체 체계와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 /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의 상세표

마지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원조목적 코드표 <표 10>⁶⁰⁾을 살펴보면,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경제협력개발기구 목적코드 16061)’가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분야의 하위 사업에 독립적인 코드와 사업 명, 즉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로 분명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드가 분명하게 분리된 것에 비해, 실제로 등재된 예를 보면 고대공예품 보존지원, 공연장 건립, 기여국 언어 교육, 역사기록보관소 지원 등으로만 기입되어 있고 유형별 분류 작업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단순 사업으로만 나열되어 있다는 점에서⁶¹⁾ 아직 미흡한 코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선진 공여국에서도 정확하게 ‘문화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또한 한국은 전체 공적개발

6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p.60

6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op.cit.*, pp.60-61

원조에 대한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 지원사업⁶²⁾의 비중이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하여 원조규모에서 뒤처지지 않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⁶³⁾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이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한국의 원조 특성으로 차별화하여 문화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제3절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세 가지 과제

1. 문화향유와 문화감성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방향을 안내해 줄 기준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그 기준으로 문화향유와 문화감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문화향유는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와 문화인지 공적개발원조 모두와 관련이 있으며 문화감성은 좁게는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준으로, 넓게는 국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포함하는 단계에서 요구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문화 향유란 특별한 교육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원국에 박물관을 개관해 주거나 영화나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향유는 빈곤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라는 선입관을 갖기 쉽다. 당장 끼니를 굶은 사람에게 영화나 전시가 효율적인 지원책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향유는 사회문화적 빈곤퇴치를 위한 중요한 가치로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초월한 인간의 욕구에 대한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엘더퍼(Alderfer)의 욕구이론(ERG theory: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을 이용하였다. 엘더퍼의 욕구이론은 욕구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다음의 <표 11>과 같다.

62) 동일한 문단에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 목적코드 16061에 해당하는 사업을 가리킴.

63) 제5장 <표 12> 참조

성장욕구(개인의 창조적 성장, 잠재력 극대화)

관계욕구(타인과의 대인관계, 가족과의 관계)

존재욕구(배고픔·갈증·안식처)

<표 11> 엘더퍼의 욕구이론

기본적인 욕구원리는 하위욕구가 충족될수록 상위욕구에 대한 욕망이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엘더퍼는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고차원의 욕구에 대한 만족의 결핍 혹은 좌절이 그보다 낮은 저차원의 욕구를 인간에게 보다 중요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⁶⁴⁾ 즉 가장 고차원 욕구에 해당하는 문화적 향유에 대한 결핍이 배고픔과 같은 존재욕구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여국은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수원국 주민의 문화향유와 같은 고차원적인 욕구를 선불리 배제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공여국은 수원국 국민을 결핍된 대상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수원국 주민이 기술과 지식을 전달받아야 하는 일방적인 교육 대상이라는 사고를 기본적으로 배격해야 한다. 즉 수원국 주민을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을 뿐 자체적인 고유문화를 지닌 문화적 집단과 개인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저 선진국 국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대중문화상품에 대한 접근 기회에 대해서만 빈곤 상태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주민들의 감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에 접근해야 하는데, 그들의 접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감성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즉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수원국 주민의 문화 감성과 소통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전문가들을 통해서 감성적 특성을 배우는 것은 물론 감성적 특성과 실제 행동의 연계에 대해서도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학습해야 한다.⁶⁵⁾ 예를 들어 아프리카와 같은 수원국은 하나의 국가면서도 지역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다양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이 때 그들의 감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원조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불필요한 원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렇

64) 이금희(2008), 「조선족과 한족 노동자들의 한국에서의 직업/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 ERG이론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

6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op.cit.*, pp.37-40

게 잘못된 방식의 원조는 오히려 수원국으로 하여금 방어적, 저항적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공여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문화감성을 공여국에서 습득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수원국 대상자를 직접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문화감성이 반영된 목표와 실행방법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현지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의 계획과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고 저항한다면 원조의 의미가 퇴색되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2. 수원국의 자생과 경제적 원조의 병행

문화 공적개발원조는 문화향유와 문화감성을 이해·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수원국의 자생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으로 끝없는 빈곤이 언급되고 있다.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의 부작용이 ‘반복되는 빈곤’이라는 소리가 모순되게 들릴 수 있으나, 실제로 단순한 물품 제공 등 구호적인 차원의 원조만을 반복하는 경우 아무리 많은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더라도 수원국은 절대로 부유해지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인구 중 14억 인구가 하루에 1.25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 금액은 1년에 500달러가 조금 안 된다. 1.25달러를 받는 이들의 수입을 연간 500달러에서 연간 1,000달러로 2배로 올려, 그들을 덜 빈곤하게 하기 위해서는 14억 인구에 500달러를 곱하여 총 7,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필요하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의 총 원조금 예산인 1,000억 달러의 7배에 달하는 돈으로 현재의 총 원조금 예산으로는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14억 인구 중에 2억의 인구만 도와 줄 수 있다. 물론 이것도 1,000억의 예산이 부정부패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이 온전하게 2억의 빈민층에게 전달되어야 가능하다. 이렇듯 14억의 모든 빈곤인구의 수입을 2배 늘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설령 예산을 7배까지 끌어올려 14억 빈곤인구의 수입을 모두 2배로 늘린다 할지라도 단순 구호활동으로 이루어진 원조만으로는 그들을 전보다는 덜 가난한 상태로 만들 뿐이다.⁶⁶⁾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단순 원조만으로는 가난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즉 언제 못주게 될지 모를 물고기를 주는 것 말고 직접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원인

66) R. Glenn Hubbard and Duggan, William(2010), *The aid Trap*. 조혜연 역, 『빈곤퇴치에 관한 불편한 진실들 - 원조의 덫』, 비즈니스맵, pp.171-172

것이다.

이러한 자생의 중요함을 실천한 예로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에티오피아에서 진행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에서 파견한 봉사 단원이 에티오피아 아달랄라 일부 마을 주민들의 집을 대상으로 화덕을 설치해주는 내용이었다. 사업이 종료될 무렵, 마을 주민들은 봉사단원들이 없어도 계속적으로 화덕을 만들어가고자 하여 봉사단원들의 화덕 만드는 철제 틀을 빌리기로 하였다. 이후 화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멘트와 연통 등의 자재를 스스로 구입하여 17명의 주민이 직접 화덕을 설치하였다.⁶⁷⁾ 비록 공여국 지원단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수원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기존에 만들어진 화덕을 본인의 집에 설치되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조 받던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일을 하고 배워야 한다고 느끼고 봉사 단원이 떠난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위의 사례는 비록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자생 사례가 아니라 자생을 위한 노력의 일부이지만, 우리나라가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문화향유와 문화감성을 기본으로 충족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문화를 이용하여 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아달랄라 마을은 보다 많은 가정에서 화덕을 제작하여 건강한 생활⁶⁸⁾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며 화덕을 만드는 원리를 알게 되었으므로 지속적인 수리·복구 역시 가능할 것이다. 또한 화덕을 만들어 이웃마을에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본인들의 생활 개선 뿐만 아니라 마을의 경제적 이익 창출 및 이웃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여파가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도 이러한 예를 본받아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수원국 국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의사업의 기반이 되는 콘텐츠와 기술 전수 등에 집중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 프로그램이 끝나면 수원국 국민들이 스스로 이용 가능하도록 진행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봉사단원들이 철수할 때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원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선진국들과 기술력 측면에서 또 자원을 습득 및 사용하는 조건에서도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지만 문

67) 최태욱(2012), “우리 입맛 맞춘 지원보다 그들의 상황 먼저 배려해야”, 조선일보, 2012.10.09

68)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에서는 본래 일반적인 의료 지원을 기획하였으나 현지 조사 결과 주거 환경 개선으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2009년 WHO보고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하여 매년 7만 2400명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으로 배연시스템이 되지 않은 주거환경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화제, 축제, 전통무용 등 그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자생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수원국 정부를 통해서 제공되는 단기적인 원조의 형태보다는 원조 기간 동안 수원국 국민들에게 직접 원조가 제공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원조는 종료된 후에도 국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동력으로 남게 될 것이며 민간사업의 활성화를 꺼리는 많은 수원국 정부의 방해로 인해 실제로 수원국 주민의 자생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원조를 병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점은 문화 공적개발원조에서 ‘문화’에 너무 중심을 둔 나머지 경제적 원조에 대해 등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모든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를 문화 공적개발원조로 변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차별적 전략으로 내세워 궁극적으로는 수원국이 문화콘텐츠와 창조적 사업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밝히는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목표다. 위에서 언급한 욕구이론과 같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당장 먹을 빵 한조각도 그들이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문화 공적개발원조는 반드시 경제적 원조와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문화가 아닌 다른 분야, 즉 공공보건이나 최소식량 지원 등 기본적인 경제적 원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3. 거시적인 정부정책의 필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체계 및 정책은 매우 산발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 새로운 정책을 운영방안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앞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판단과 정책은 특히 문화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중요하다.

현재 공적개발원조는 일부 지방자치 단체나 민간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적개발원조는 자연스럽게 국가의 정책을 따르게 된다. 공적개발원조가 도서구입과 같은 1년 미만의 단기적 프로그램 중심인 경우에는 정책이 산발적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문화 공적개발원조는 정부정책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다. 문화 공적개발원조 자체가 각 국가의 문화 감성을 이해해야 하고 수원국 국민들의 자생을 목표로 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목표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만 이어나갈 수 있다. 문화 감성은 시간의 누적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단기적인 교육 및 지역 방문, 혹은 단기 거주 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은 문화감성 부분에서 밝힌 바 있다.

만약, 성급한 정책의 시행과 중단으로 인해서 원조 초기에 소원한 관계가 형성되면, 양국의 관계는 원조를 시작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기 어렵다. 인간 대 인간의 신뢰를 넘어서 국가 간의 신뢰를 되돌리는 데에는 더욱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되며 한번 생긴 불신은 원조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하나의 사례로 라오스에서 진행되었던 ‘전자정부구축 지원사업’이 있다. 2004년부터 2년 간 100만불이 지원되었던 이 사업은 총 2000만불이 들어가는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고, 전자정부 시연 프로그램의 고장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했다. 2010년 원조 현장평가 당시, 사업의 결과물로는 건물 하나만 남아 있었는데 이 건물을 공무원들이 일반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⁶⁹⁾ 이러한 사례는 한국이 얼마나 준비 없이 원조에 임하는 지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를 겪은 라오스가 앞으로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며 협력관계를 구축할지도 염려스럽다.

반대로 정부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전문가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수원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한다면 한국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정치·외교적인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역시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공적개발원조의 경우 대부분 공여국 정부가 주관하거나 시행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관계를 감안할 때 정부가 원조의 모든 시행단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현지에서, 특히 자국법이 통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집행하는 일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지역전문가나 자원봉사자 집단, 종교단체,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적개발원조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현지 사정에 밝고 또 원조의 내용에 대해 지식과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조의 질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

69) 이선재(2010), *op.cit.*; <http://www.odawatch.net/articlesth/5490>

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게 됨으로 집행자에 대한 관리를 겸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여 이들을 통제하거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경우, 지원 결과가 수치화되어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으므로 성과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⁷⁰⁾

더불어 정부는 공적개발원조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수원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하며 다양한 유·무상 지원 시스템의 일괄적 관리를 통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없이 고유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주관기관과 시행기관 등 분리된 시스템으로 인한 복잡함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리며 다양한 기관에 퍼져있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비체계적인 정보는 본질적인 정보를 흐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관련 홈페이지만을 방문하여도 알 수 있는데, 실제 본 연구를 위해 조사를 하던 중,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 국제협력단 홈페이지, 공적개발원조도서관,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공적개발원조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본 결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있으나 다른 기준 및 분류체계의 홈페이지들로 인해 오히려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공적개발원조를 관리 감독 진행하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 하나의 연동체제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흐름을 파악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전체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예산 낭비를 막으며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공적개발원조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전반에 걸쳐 보다 높은 공적개발원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7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op.cit.*, pp.228-230

제5장 한국의 문화 공적개발원조

제1절 해외의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현황과 시사점⁷¹⁾

앞장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가치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면, 본 장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한국의 현재 문화 공적개발원조와 비교해, 시사점을 얻고 한국의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는 주요 4개국⁷²⁾의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지원 현황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자료 시스템에서 목적코드(culture and recreation;16061)를 통해 결과값(양자원조 기준)으로 나온 각국의 자료를 참조하여 만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이에 도출된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총예산과 건수를 바탕으로 <표 2>의 공여총액과 비교하여 공여총액 대비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지원액 비율을 추가로 정리하였다.

국가	연도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총예산(US million)	건수	공여총액 (US million)	비율
독일	2007	177.55	167	12,291	1.44%
	2008	40.62	356	13,981	0.29%
	2009	48.21	381	12,079	0.40%
	2010	42.08	365	12,985	0.32%

71) 제 5장 1절의 현황과 사례 등 전체내용은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사이트를 이용하였으며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역시 별도의 주석을 제외하고는 통계사이트 내 기입된 데이터를 문장으로 재구성하였다.

72) 주요 4개국을 선정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23개국 중 2011년도 공여실적이 가장 많은 3개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 중 한국에서 가장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국가인 미국을 제외한 2개국을 통해 공적개발원조에 적극적인 국가가 문화 공적개발원조에도 적극적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유일한 아시아권 회원국가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총국민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구성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많은 원조비용에서 차지하는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했다.

	2011	47.39	334	14,093	0.34%
프랑스	2007	234.68	165	9,884	2.37%
	2008	204.88	164	10,908	1.88%
	2009	226.12	172	12,600	1.79%
	2010	76.64	137	12,915	0.59%
	2011	170.25	276	12,997	1.31%
일본	2007	29.82	187	7,679	0.39%
	2008	28.09	201	9,579	0.29%
	2009	33.77	227	9,469	0.36%
	2010	34.54	267	11,054	0.31%
	2011	33.61	281	10,831	0.31%
스웨덴	2007	33.60	117	4,339	0.77%
	2008	27.88	156	4,732	0.59%
	2009	25.16	123	4,548	0.55%
	2010	17.56	100	4,533	0.39%
	2011	18.09	89	5,603	0.32%
한국	2007	1.76	28	696	0.25%
	2008	3.75	177	802	0.47%
	2009	3.27	69	816	0.40%
	2010	2.75	54	1,173	0.23%
	2011	5.63	178	1,324	0.43%

<표 12> 5개국의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예산 현황

독일은 2011년 기준 공여실적에서 14억 9300만 달러를 지원하여 두 번째로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이다.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에 지원하는 금액은 2011년 기준으로 4739만 달러로 1억 7025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랑스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나 일본의 3361만 달러, 스웨덴의 1809만 달러보다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공여 총액 기준대비로는 2011년 기준 0.34%로 스웨덴의 0.32%, 일본의 0.31%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지원건수로는 2008년 356건, 2009년 381건, 2010년 365건, 2011년 334건으로 일본의 2011년 281건, 프랑스의 2011년 276건과도 많다. 그로 인해 건수당 지원액은 2011년 기준 141,886 달러로 스웨덴의 2011년 203,258 달러보다 적으며, 일본의 2011년 119,609 달러보다는 많다.

독일은 2008년 학교 스포츠와 관계된 분야에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8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리비아, 콩고, 알제리아, 우크라이나 등을 지원해 왔다. 독일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지원의 특징은 영화제, 축제, 콘서트 등을 개최하는 것이다. 2009년에는 제 14회 독일-터키 영화제, 독일 서부 오벨하우젠(Oberhausen)에서 열린 제 55회 단편영화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서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화와 음악에 대한 제 22회 아프리카 페스티벌, 아프리카의 최고 디자이너들에 의한 아프리카 모자이크 패션쇼를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제 23회 아프리카 페스티벌을 지원하는 등 전년도와 연관된 연속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07년-2008년도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예산 규모가 공적개발원조 선진국 중 최상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1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11년 기준으로 일본과 독일에 비교하였을 때 일본의 3361만 달러와 독일의 4739만 달러보다 많은 1억 7025만 달러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약 4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프랑스가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대로 문화사업 건수는 276건으로 2011년 기준 일본 281건, 독일 334건과 비교하여 오히려 적어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사업 예산 총액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한 점과 비교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 프랑스의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사업에 대한 건수 당 지원액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2010년 115,288 달러, 2011년 141,886 달러의 건수 당 지원액을 보이는 반면 프랑스는 2010년 559,416 달러, 2011년 616,848 달러로 독일과 약 5배에 해당하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프랑스가 2007년 1,422,303 달러, 2008년 1,249,268 달러, 2009년 1,314,651 달러로 해마다 건수 당 지원액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변함없다.

실행 방법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지원은 장비나 시설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원조 사업에 활성화 되어 있다. 프랑스는 스포츠(2009 우크라이나, 레바논, 베닌, 2010 마요트 섬)관련 지원, 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지원 등 도서관(2009 부르키나파소, 네지르, 토고, 2011 니제르) 지원사업과 프랑스의 국제방송 CFI⁷³⁾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특징으로는 언어교육원인 알리앙스 프랑세즈⁷⁴⁾를 통하여 자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넌

(Bénin),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와 프랑스 해외영토인 마요트 섬(Mayotte)과 같은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프랑스가 동일한 ‘프랑스어’ 사용국가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자국의 언어 및 문화 보급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일본은 전체 원조규모가 매우 높은 순위에 속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에 대한 지원액이 낮은 편에 속한다. <표 12>을 보면 2011년 기준 공여 총액 대비 0.31%를 보여 총공여실적에서 2배가량 차이가 나는 스웨덴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의 1.31%와 비교하여도 낮은 수치이다.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의 지원사업 전체 건수는 높은 편이지만 건수 당 사업 예산은 역시 낮은 편에 속한다. 2010년 129,363 달러, 2011년 119,609 달러로 스웨덴의 2010년 175,600 달러, 2011년 203,258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특징으로는 주요 지원국인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의 지원 영역에 비해 일본의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의 지원이 장비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281개 지원사업 중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미정사업⁷⁵⁾ 263개를 제외한 18개 중에서 16개의 사업이 장비 지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2011년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일본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장비 부분에서는 국립극장의 음향과 조명관련 장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일본어 교육을 위한 언어 관련 장비(2010년 조지아, 중국)와 가라테, 유도를 위한 장비 지원(2010년 미얀마, 2011년 가봉, 페루)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사업 중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문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공연, 미술, 출판과 미디어, 생활문화의 4개 범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4개의 영역은 거의 동등한 예산과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 미술 전시의 경우에만 특별한 전시를 할 때 별도의 예산을 특별히 편성하고 있다. 생활문화팀에는 16명이 4개의 프로그램에 배치되어 있으며 일본문화 소개에 30%, 문화협력에 20%, 문화인 초청에 20%, 시민청소년 교류에 30%의 비중을 두고 있다. 생활문화팀의 지원사례로 아프가니스탄의 이스타리후 지역(일종의 구이요리를 만드는 식기가 없어지고 있

73) CFI(Canal France International)는 현재 프랑스 국제방송사인 France24의 시작프로젝트로 정부에서 외국 시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명이다.

74)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는 재단법인 언어교육기관으로서 프랑스 및 전 세계에서 불어 강의를 제공하고 프랑스 및 프랑스 문화권 국가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곳으로 현재 136개국 919개의 현지 법인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75) TC Aggregated Activities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장비, 시설, 프로그램 등으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어서, 전통이 없어지기 쉬운 상태였음)민을 일본에 초청해 도예 연수가 있었다. 초청된 지역민들은 도예 연수 기간 동안 이스타리후 전통 그릇을 만들었는데, 전통적인 문양과 스타일 등의 고유성은 그대로 살리되, 만드는 방법과 사용하는 도구에 있어서 일본의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식기의 생산율을 높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원받았다.⁷⁶⁾

스웨덴은 국가의 총국민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구성비가 1.02%로 23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지만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액이 높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에 대한 지원액은 2011년 기준 8900만 미국 달러로 <표 12>의 5개 국가 중 가장 낮으며 공여총액 대비로는 2011년 기준 0.32%로 일본의 0.31%와 독일의 0.34%와 비슷하나 1.31%인 프랑스에 비해서는 낮다. 건 수당 사업예산은 2011년 기준 203,258 달러로 일본의 119,609 달러, 독일의 141,886 달러에 비해 높다. 이는 스웨덴이 보다 집중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 역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다수이며 도서관과 박물관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룬다. 2010년의 경우 100건의 사업 중 59개의 지원 사업이 도서관과 박물관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음악 분야(2010 몬테네그로, 남사하라) 등에도 지원하였다. 개도국의 박물관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지역의 음식콘텐츠를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음식 콘텐츠의 역사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주민들이 스스로 그들의 문화에 대해 정체감과 자긍심을 갖고 표현하게 되었고, 그렇게 표현된 다양한 내용들을 박물관에 전시했다.

또 다른 스웨덴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사업의 특징으로, 해마다 진행되는 다양한 펀드 운용과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2009년에 진행된 문화 펀드 중 하나를 살펴보면, 짐바브웨에 지원하는 CULTURE FUND가 있다. 이 기금은 짐바브웨의 문화부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자금과 기술적인 지원, 문화업자와 기관, 운영 등을 통해 2007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400만 SEK(스웨덴 통화)을 지원했다. 특히 영화, 극장, 문학, 음악보존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세부적으로 지원 및 진행되고 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경우, 2011년 베트남 지역의 민주주의 촉진과 인권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 문화 후원프로그램으로 문화교류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⁷⁷⁾

또한 스웨덴 인스티튜트(SI)의 문화 개발협력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스웨덴 인스

7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op.cit.*, p.195

77) OECD(<http://www.oecd.org/dac/stats/idsonline.htm>):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티튜트의 모든 부서는 문화사업을 다루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성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아프리카 지역의 국제개발협력적 문화사업은 'Creative Force'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주의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행하는 스웨덴의 특성을 살려 주로 아프리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2009년에는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스웨덴 국제 국립 의회와 남아프리카 예술관광부 간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28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 4개국의 문화공적개발원조 현황을 동일한 조건에서 한국의 현황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에서 2007년 176만 달러, 2008년 375만 달러, 2011년 563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여총액에 비해서도 상승하는 추세다. 2011년 기준 일본의 0.31%, 독일의 0.34%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0.43%로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의 지원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1년 기준 비슷한 공여실적을 가진 오스트리아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오스트리아는 29만 미국 달러를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이는 총액 대비 약 0.03%로 대한민국의 지원액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집행한 2011년 기준 563만 달러의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총예산에서 178건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것을 보면, 건 수당 지원액이 31,629 달러로 동일년도 일본의 119,609 달러, 프랑스의 616,848 달러, 스웨덴의 203,238 달러, 독일의 141,886 달러에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한국이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지원예산에 비해 많은 수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또 다른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이 가라테, 유도와 관련된 장비를 지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태권도 교육(2007년 이집트, 캄보디아 등 5개국, 2008년 라오스, 몽골 등 177개, 2009 에콰도르, 우르라이나 등 43개, 2010년 탄자니아, 미얀마 등 47개, 2011년 베트남, 필리핀 등 140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2011년 사업에는 튀니지와 태국에 한국 음식, 한국 전통 춤 등에 대한 사업도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한국 문화 공적개발원조는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교훈과 수원국의 문화감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이 스웨덴은 지속적인 기금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을 연속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매회 같은 축제 등을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속성을 통해 수원국과의 신뢰 구축 및 원조에 대한 수원국의 노하

우를 축적하는 일을 한국에서도 추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 사업이 태권도 등 한국 문화에 초점을 맞춘 채 타지역과의 교류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은 공적개발원조보다는 문화적 교류 프로젝트의 형태로 보일 수 있으며 이 또한 수원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제공인지, 한국 문화와 관련된 지원만이 과연 공적개발원조의 본래 취지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단,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서 갖는 한계, 즉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의 세부사항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원조사업들이 사업자체의 효과에 치중하고 통계자료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만의 문화 공적개발원조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화 한다면 다른 국가의 문화 공적개발원조와 차별화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원조 금액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검증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제2절 한국의 문화 공적개발원조 운용프로그램 제안

제 1절에서 살펴본 해외 사례들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 공적개발원조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 2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인지 공적개발원조’를 바탕으로 수원국 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문화감성을 중심으로 하되 수원국의 자생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간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축제보존프로그램

축제는 문자 그대로 축(祝)과 제(祭)가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문화현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거나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축제들은 성스러운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하는 축제인 경우가 많다. 부여의 영고나 고구려의 동맹, 페루 쿠스코의 태양제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⁷⁸⁾ 축제를 보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분석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크게 두 가지의 근본 입장, 즉 기존질서의 긍정적 고양으로 보는 입장과 기존 규범의 파괴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축제를 기존 질서의 긍정적

78) 이승중, 류정아, 이상룡, 이상일, 최문규, 고영석(2009), 『축제와 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p.42

고양으로 보는 시각의 대표적 인물은 뒤르켐이다. 그는 축제를 공동체적 신과 인간의 교류로 보면서 축제가 가지는 기능이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사회의 통합적 기능과 달리 축제를 기존규범과 질서의 파괴로 보는 시각은 니체, 프로이트, 바흐친, 터너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축제는 가치의 전도와 질서의 전복을 통한 해방과 유토피아의 이념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다.⁷⁹⁾

따라서 축제의 전통적 의미를 일탈(종교적 행위 포함)을 통한 사회적인 통합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현대의 축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종교적 의미나 사회적 통합의 의미보다는 관광상품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축제가 관광 상품화되면서 해마다 새로운 축제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근본적인 콘텐츠 부족과 이미 사라져버린 전통 의식 등으로 인하여 비슷한 형태의 의미 없는 축제들만 대량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이 산업화 초기에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맹목적인 서구화, 산업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전통을 지키던 많은 지역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주하였으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구한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시간들을 일터에서 보냄에 따라 새로운 동네 주민간의 교류 등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거주지에서는 새로운 전통이 생겨날 수 없었으며 희미해진 교류 속에서 축제는 더 이상 일탈을 통해 사회적인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시골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노인만 남아 전통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나갈 사람이 없다.

그러나 수원국은 전통적 축제가 희미해져 가는 한국과 입장이 다르다. 수원국 중에는 더딘 경제성장의 몇 되지 않는 장점으로 축제와 같은 전통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 역시 경제적 발전을 동반할 경우 한국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수원국에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의식과 축제 등의 전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경우 부족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부족민들만의 수많은 전통과 통과 의례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미디어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나 여행 프로그램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단순 구호활동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돈이나 식량만이 그러한 전통 보존의 대가로 제공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순한 촬영을 소모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하나의 원조 방법으로서 이용하되, 하나의 전통의식(意識)에 대한 인터뷰와 부족

79) 김영순(2006),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p.24

민들에게 전해져 오는 의식에 대한 그 이전의 기록들, 그리고 여러 번의 재촬영을 통한 전통의식 평균절차를 도출하는 등 보다 객관적이고 보존할만한 기록의 형태로 그들의 전통을 기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영상물, 서적 등으로 출판하여 생기는 부가가치를 부족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어 그들의 콘텐츠로 인한 수익금을 순환시켜야 한다. 이것은 부족 자체의 전통을 기록하는 일이자 그들의 문화를 세계인들이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전통을 지키는 일은 시간이 흘러 명맥이 끊어지더라도 복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후에 후손들에게 정통성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수원국의 경제 발전 이후에는 유럽의 토마토 축제나 망통 축제와 같이 하나의 문화콘텐츠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⁸⁰⁾

이러한 축제나 의식에 대한 보존과 지원은 꼭 기원전부터 시작되는 오래된 축제나 몇 백 년 된 의식을 대상으로만 할 필요는 없다. 한 예로 FESTAC (World Black and African Festival of Arts and Culture)을 들 수 있다. 이 축제는 아프리카 문화의 성취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아프리카의 신생국들이 함께 힘을 모아 1966년 세네갈에서 시작되었다. 1956년 파리에서 개최된 범아프리카 작가·예술가 문화 협회 (Pan African Cultural Society of Writers and Artists) 회의에서 아프리카의 예술과 문화를 부흥하기 위한 축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제 1회 축제에서 두각을 나타낸 나이지리아가 제2회 축제를 개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비아프라 독립전쟁⁸¹⁾으로 내전에 처한 나이지리아가 축제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다가 1977년이 되어서야 연방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라고스와 카두나에서 개최되었다. 제 2차 FESTAC 축제는 북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전 아프리카 통일기구 회원국이나 유럽과 북미, 중남미, 카리브 해 국가들의 흑인 공동체들이 모두 참여했으며, 연극, 음악, 춤과 같은 무대 공연을 비롯해 패션쇼와 영화제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고, 아프리카의 문학 및 예술에 관한 학술대회, 기마 및 선박 해상 사열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 축제는 단순한 예술제에 머물지 않고 아프리카 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쿠데타로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나이지리아는 더 이상 축제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다.⁸²⁾ 이러한 의미 있는 축제의 중단은 비록 오래된

80) 전통적인 부족에게 화폐와 신문물에 대한 잦은 접촉은 오히려 전통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은 별도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81) 비아프라 전쟁(Nigerian Civil War)은 1967년부터 1970년에 나이지리아 동부의 주가 '비아프라 공화국'으로 분리독립을 선언한데서 발생한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와 비아프라와의 싸움이었으며 1970년 1월 15일에 비아프라가 항복하였다.

전통적 축제는 아니지만 아프리카와 같이 가난한 대륙 혹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식이므로 원조의 대상으로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민족궁대축전(WTAF:World Traditional Archery Festival)’이 있다. 세계민족궁대축전은 똑같은 종목과 똑같은 규정으로 진행되는 올림픽과 달리 개별민족(국가)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공유하는 스포츠 축제다. 이 대회는 2007년 5월 12일부터 3박 4일간 세계최초로 ‘민족전통 활 국제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2013년에 7회를 맞이하였다. 예산은 약 3억으로 정부 예산 2억, 지방예산 1억이며 참가선수는 국내외 500여명(31개국)이었다. 이 대회는 활의 사용이 기원전부터 있었고 그 흔적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는 주동진의 연구에서 비롯되었으며, 각 민족의 활과 화살을 통해 그 안에 녹아 있는 민족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축제로서⁸³⁾ 국제경기대회 및 학술세미나를 더불어 개최하고 있다.⁸⁴⁾ 이러한 축제는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 국민들의 자긍심을 소중히 여기고 각각의 고유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라는 측면에서 독창적이다. 이러한 축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원국의 전통을 알리고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민족이나 국가들에 대한 참여지원이 하나의 원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언어보존프로그램

유네스코는 절멸 위기에 놓인 언어의 보존과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제학계 언어학연구소(SIL International)가 발간하는 에스놀로그(Ethnologue)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전 세계에 6천 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절반 정도인 3천 개의 언어가 현재 절멸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다. 오늘날 사용되는 언어의 절반 이상은 사용자 수가 3천 명 미만이고 4분의 1 정도는 사용자 수가 1천 명 미만인데, 모어⁸⁵⁾ 화자가 10명 이하인 언어도 229개에 달한다. 언어 전문가에 의하면 전 세계의

82) 윤주, 한건수(2009),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설립관련 문화수요 조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43-45

83) 주동진, 정연택(2011), 「고대 동양 궁문화의 가치와 의의: 논어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61호, pp.199-218

84) 주동진(2010), 「전통문화의 보존과 세계적 소통의 의미에서 살펴본 世界民族弓大祝典(WTAF)의 의의: 다민족다문화 전통스포츠축제」, 『다문화와 평화』, 7권 1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p.77

85)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 그 모체가 되는 언어. 예를 들어 프랑스어의 모어는 라틴어.

6천여 개의 언어 중 매 14일마다 한가지의 언어가 사라진다고 한다.⁸⁶⁾

언어는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상징적 작품으로 언어마다 소리와 구조가 다르고 사고의 패턴이 다르다. 따라서 한 언어가 사라지면 언어 자체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문학과 문화, 철학체계, 문제의 해결 방식 등 많은 지식이 언어로 표현되므로 언어를 상실하면 그것들 또한 대부분 상실된다. 언어마다 숫자체계, 기억장치, 공간의 방위체계도 다른데 예를 들어 숫자는 영어보다 웨일즈어나 만다린으로 세는 게 더 쉽다고 한다. 따라서 그 사회의 언어가 사라지면 민족지학적 정보가 담긴 백과사전이 사라지는 것이다.⁸⁷⁾ 이러한 언어는 주로 원주민들의 언어로 타민족의 지배적인 구조 하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리게 된 사례가 많다.

따라서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입장에서 현재 절멸위기에 놓인 니브호어(нивхугу)와 같은 언어들에 대하여 그들이 언어를 사용하고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대(代)에서 언어가 사라지더라도 후대의 누군가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록화 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짜아찌아족과 같이 언어(bahasa ciacia)가 구전으로만 이어져 나가는 경우에 한국어를 통해 그들의 언어를 기록하고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언어 기록과 더불어 ‘한글’의 유용함과 과학성도 널리 알릴 수 있다. 단, 현재의 짜아찌아족과 같이 사업의 중단⁸⁸⁾으로 인한 신뢰성 하락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3. 번역 프로그램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문학작품이 한글로 쓰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한글은 또한 한국(북한과 남한)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로 타국가의 문학, 예술 등을 접하고 전달하는데 있어서 장애로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호주 국민들은

86) 언어다양성 보존 활용센터 홈페이지(www.cld-korea.org)

87) Jared Diamond(2013), *The World Until Yesterday*, 강주현 역, 『어제까지의 세계』, 김영사, pp.594-595

88) 동아일보 (2013), “짜아찌아족 5개월만에 다시 한국어 수업”, 2013.1.19; 2009년 짜아찌아족을 위한 한글 강좌가 국내 한글 관련 민간단체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2009년 7월 “짜아찌아 족이 한글을 공식 표기 문자로 사용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모범 사례로 국내에 알려졌고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공식적인 한글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 9월 부턴대에 세종학당을 설립했다. 하지만 정부와 공동 부담으로 교육을 맡아 온 경북대가 지난해 8월 재정적 부담과 바우바우 시와의 갈등을 이유로 세종학당 운영을 중단했고, 현지 유일의 한국인 교사인 정덕영 씨(52)도 귀국했다. 이 과정에서 ‘짜아찌아 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다’라는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는 공용어 및 고유문자가 없는 지방어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다. 짜아찌아 족은 한글 보급 단체의 권유에 따라 한글을 또 다른 표기문자로 사용한 것뿐이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발행된 잡지를 별다른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으며 미국 여행에서도 뮤지컬이나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으며 최신의 소식들을 별도의 해석 없이 접할 수 있다. 물론 문화적인 단어나 방언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이는 식민지 지배의 영향이기도 하나, 현실적으로 언어가 문학이나 예술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기도 한다. 그들은 갖 출판된 책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번역을 기다려야만 하거나, 사전 옆에 두고 더듬더듬 읽어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한국의 경우 점차 많은 번역 업체들과 동시 통역사들이 증가하여 번역에 대한 분야가 커져가고 있어 점차 나아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원국의 상황은 매우 나쁘다. 수원국의 국민들은 타언어권의 책을 읽는 것도, 타언어권의 사람이 자신들의 책을 읽는 것도 아주 드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번역은 고사하고 자국어에 대한 문맹률조차도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든 수원국 국민이 자국어조차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중 2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별도로 책을 번역하는 직업을 갖지 않거나 번역에 봉사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나라의 번역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또는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 그러한 번역을 하려는 업체도 없을 것이며, 그러한 책을 읽으려는 수요 역시 낮을 수밖에 없기에 자연스럽게 번역시장은 활성화 될 수 없다.

번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일본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설국》을 영어로 번역하여 노벨문학상까지 받게 만든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Edward G. Seidensticker)이다. 원작의 독창성과 예술성이 좋은 번역과 만날 때 외국 독자를 감동시키는 새로운 언어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특히 문학은 고유의 지속성과 이미지로 인해 문화적 전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⁸⁹⁾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문화 이해와 교류를 이끌어 내고 《설국》처럼 세계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문학 외에도 실용서적 번역, 영화 자막 번역 역시 번역을 통해 수원국이 필요한 지식과 문화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번역은 문화 공적개발원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수원국 내에 역량을 가진 번역자를 선별하거나, 번역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89) Kwon Se-Hoon, Kim Kab-Nyun(2012), 「*Übersetzung und Verbreitung von Koreanischer Literatur im Auslan -Geschichte, Status quo und die Frage nach der Globalisierung*」, 『독일문학』, 124권, p.116

현재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혹은 한류를 매개로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 중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번역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도 저비용, 고효율의 번역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세계 곳곳에 설립된 세종학당과 연계하는 것이다. 세종학당은 아시아 24개국에 79학당, 유럽 13개국에 20학당, 오세아니아 2개국에 2학당, 아프리카 5개국에 5학당, 아메리카 8개국 14학당과 같이 총 52개국에 120학당을 운영하고 있다.⁹⁰⁾ 비록 세종학당이 수원국내에 직접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수원국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타국의 학생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 혹은 필요로 인하여 세종학당을 찾는 이들로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므로 이들을 활용한다면 보다 원활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어-영어-수원국 언어의 형태가 아니라 한국어-수원국 언어가 바로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왜곡되지 않는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며 시간 또한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종학당은 이러한 한국어-외국어 간의 접점임은 물론 공간적으로도 세계 곳곳에 위치함에 따라 그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로 연결이 가능하게 한다. 연 단위 프로젝트의 한계가 사무실 철거 등 공간의 문제가 크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지속적인 공간의 존속과 관계의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본래 목표인 한국문화와 한국어의 전수 과정에 번역가 양성과정을 연계하여 장기적인 원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로 이주한 많은 결혼이주민도 이 과정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중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되었던 제 1기 프로그램 중 아리안(Arian)을 참조할 수 있다. 아리안은 유럽 소수민족 언어로 된 유럽문화에 대한 근대작품과 희곡 등을 유럽 공식어로 번역하는 일이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라 유럽인들에게 공동의 문화기반 보급에 기여하는 전문 번역가의 양성을 특별히 지원하였다.⁹¹⁾

번역 프로그램 운용시 주의할 점으로는 번역이 직역, 의역이 아닌 ‘문자 대 문자’의 텍스트 수준에서 통째로 번역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문학 번역의 경우, 번역 전 문학과 번역 후 문학 사이의 ‘호환성’의 정도가 최고도로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세기 이후 우리나라의 문학이 ‘시’, ‘소설’, ‘희곡’ 등의 서양 문학의 틀 안에서 재수용되었던 것처럼 수원국에 있는 전통 문학들이 우리나라의 ‘향가’와 ‘시가’처럼 우리의 문학적 틀에 맞춰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⁹²⁾ 또한 공여국의 언

90) 세종학당 홈페이지(<http://www.ksif.or.kr>)

91) 사순옥(2005), 「유럽연합(EU)의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프로그램」, 『독일언어문학』, 제30집, p.223

어를 수원국의 언어로 번역할 서적을 선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수여국의 수요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현재 필요한 서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어떠한 번역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 국가 내 부족어가 많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대표어를 선택하여 번역을 주도하며 그들의 언어 역시 영어나 한국어를 통해 번역 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이해와 교류, 실용지식의 보급 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4.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허브시설 활용

현재 한국에는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이나 각 지방단체 혹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진행되는 단기적인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위하여 들어오는 외국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초청되는 외국인들은 보통 한 개의 교류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 등 단기적인 목적 및 일정을 달성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를 활용하여 실제 초청비용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항공비 및 숙박비 등의 여비를 여러 기관에서 분담하고 각 기관의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매개의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공간으로서 개인들을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결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교류가 계속 될 수 있는 영구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로 현재 광주에 건설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라는 가치와 함께 아시아문화의 허브라는 역할을 내세우는 공간으로 빛의 숲을 주제로 5·18 당시 시민군 본부로 사용된 전남도청 본관의 별관을 그대로 두고 주요시설물을 지하 10개층 안에 집어넣은 지하광장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총 5개관의 시설이 들어선다. 대극장과 중극장으로 이뤄진 아시아예술극장과 문화콘텐츠 복합전시관으로 구성된 문화창조원, 민주인권평화기념관과 아시아 문화교류지원센터 등이 들어서는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아카데미와 아시아문화자원센터가 있는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 체험전시관 등을 내세운 어린이 문화원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 넓고 다양한 시설들로 채워진 공간은 각양각색의 아시아 문화 콘텐츠가 모이고 활발하게 소통되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아시아문화의 가치가 새롭게 공유되고, 지속가능한 문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앞서 살핀 매개의 역할이라는 측면과 실제 공간이라는

92) 정명교(2013), 「세계문화와 번역의 맥락 속에서 살펴 본 한국문학의 오늘」, 『비교문학연구』, 21권, 2호, pp.12-14

측면에서 2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임에 분명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위원회 위원인 하야시다 히데키(林田英樹)는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이 각국의 문화를 향유하고 확산의 통로이자 허브로서 아시아 문화의 세계화를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히기도 하였다.⁹³⁾ 이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원조사업과 연결해보면, 훌륭한 문화적 원형을 가진 아시아 지역 수원국의 문화계 인사를 전당으로 초청하여 문화콘텐츠를 수집하고, 수집된 각종 문화자원은 오픈 소스로 개방하여 새로운 장르의 창·제작 작품을 탄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생산되는 수익은 일정한 분배를 통해 수원국 내 프로그램 진행 등 다시 생산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전당 내 기본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5개월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해 광주 및 국내에 있는 많은 내·외국인과 함께 또 따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초청된 수원국 예술가 및 기획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도울 것이다. 이러한 개인 간의 기관 간의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전당 및 원조사업의 가장 큰 생산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공적개발원조 대상이었던 도로, 수도, 건물 등의 인프라 시설과는 달리, 서로 다른 문화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결국, 아시아문화전당은 공간으로서 정착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고 연속성 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할 수 있는 큰 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콘텐츠의 교환이나 공동제작 등을 진행하거나 전당 내 기술력 등을 살려 원조국의 기술부족으로 인한 소스의 콘텐츠화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장기적, 거시적인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창구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93) 하야시다 히데키(2013), “아시아문화의 허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한국일보 2013.11.14

제6장 결론

한국은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에서 벗어나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협력전략을 통한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마다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균 수준까지 원조금액을 증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원조 과정에서도 수원국에 대한 이해 부족, 단기적인 정책 시행,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효율적인 원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빈곤 퇴치’에 대한 세계적 요구와 원조를 받았던 수원국의 보상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를 계속 진행해 나가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공여국과는 다른 한국만의 공적개발원조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제시하였다. 문화 공적개발원조는 단방향 원조에서 비롯되는 역효과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통해서 수원국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경제적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문에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두 가지 개념을 명시하여 한국만의 문화 공적개발원조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화 인지 공적개발원조’ 개념은 한국 전체 공적개발원조를 포괄하는 가치로써 수원국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는 ‘문화’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고, 수원국 주민들의 전통을 보존하고 문화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지원 하는 측면에서 활용되었다. 또한 한국은 수원국이었던 경험, 한류의 확산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관심 및 소통의 용이함, 다문화국가로 변해가는 한국사회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는데 매우 적합한 국가이다.

한국이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자생성 추구, 경제적 원조 병행, 거시적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며,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의 사업들과 비교하여 단기적·소모적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에 점차 원조액을 증액하고 있다는 점과 선진 공여국조차도 일부 프로

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이외에 명확한 원조체계가 없다는 점은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한국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렇듯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충분히 이용한다면 문화 공적개발원조 분야의 비교우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양성과 공여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야 하며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연계 및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선주(2013), 「박근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 정책 : 과제와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강영문(2013), 「한국의 아세안 ODA와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4권 2호
- 강주홍(2012), 「한국 문화 ODA현황과 전망」, 『한눈에 보는 유네스코 -2012 문화와 발전 라운드테이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강지희(2009), 『공적개발원조(ODA)의 목적별 원조 형태의 차이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관계부처합동(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구정우, 김대욱(2009), 「세계사회와 공적개발원조: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9~2007」, 『한국사회학』, 제45집 제1호
- 권세훈, 김갑년(2012) 「Übersetzung und Verbreitung von Koreanischer Literatur im Auslan -Geschichte, Status quo und die Frage nach der Globalisierung」, 『독일문학』, 124권
- 권율, 박수경(2011), 『최근 선진공여국의 ODA 개혁조치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규원(2009) 『한국 개발원조(ODA)의 결정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선근(1997),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개방향」, 『정책연구』, 97-16, STEPI
- 김상우(2012), 「개도국을 위한 적정기술을 활용한 적정디자인 진흥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제25권 제2호
- 김상태, 윤지웅, 김영곤(2013),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정부학연구』, 제19권 제1호
- 김영순(2006),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 김정태, 김주현 외 3명 (2012), 『인간중심의 기술, 적정기술과의 만남』, 에이지21
- 대외경제협력기금(2011), 「2011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주요내용」, 경협기획실

-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2013), 『숫자로 보는 ODA -2013 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 박은하(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국제개발협력』, 제4호, 국제개발협력단
- 사순옥(2005), 「유럽연합(EU)의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프로그램」, 『독일언어문학』, 제30집
- 신상협(2008), 「영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연구 : 영국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0), 『문화다양성과 문화간 대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
- 유용조(2011),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 『세계지역 연구논총』, 제29집 1호
- 윤주, 한건수(2009),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설립관련 문화수요 조사」,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 이금희(2008), 「조선족과 한족 노동자들의 한국에서의 직업/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 ERG이론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중, 류정아, 이상룡, 이상일, 최문규, 고영석(2009), 『축제와 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태주(2013),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흐름과 향후과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 이천우(2011), 「국제 공적개발원조의 신조류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산업경제 연구』, 제24권 제2호
- 장현식(2007), 장현식(2007),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의미와 우리의 향후 추진방향」, 『국제기구저널』, 제2집 제1호
- 정명교(2013), 「세계문학과 번역의 맥락 속에서 살펴 본 한국문학의 오늘」, 『비교문학연구』, 21권, 2 호
- 정유진외(2010), 『공적개발원조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주동주, 차문중, 권윤희 외(2012), 『한국형 ODA 모델 수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 사회 협동연구 총서, 제1권
- 주동진, 정연택(2011), 「고대 동양 각문화의 가치와 의의: 논어를 중심으로」, 『인문 연구』, 제61호

- 주동진(2010), 「전통문화의 보존과 세계적 소통의 의미에서 살펴본 世界民族弓大祝典(WTAF)의 의의:다민족·다문화 전통스포츠축제구」, 『다문화와 평화』, 7권 1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 하영수(2005), 「일본 ODA의 문화협력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2집 3호
- 한국개발연구원(2013) 「개발협력 동향분석 2013년 2/4분기」, 국제개발협력센터
- 한국수출입은행(2013),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통계』
- 홍기원(2008), 「‘국제교류’의 다리 놓기 : 문화동반자사업의 성과와 전망」,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 329호
- 홍성걸(2011), 『ODA리포트-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오래
- KOICA(2012), 『2011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 KOICA(2013), 『2012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국외문헌

- Alesina, A. & D. Dollar.(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
- _____ (1998),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Cambridge: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ingranelli, D.L., & T.E., Pasquarello.(1985, Human Right Practices and the U.S. Distribution of Foreign Aid to Latin American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3)
- Gates, S. & A. Hoefler.(2004) *Global Aid Allocation:Are Nordic Donors Different?*. 2nd ed. Boston:Little-baoju
- Jared Diamond(2013), *The World until yesterday*, Penguin Books
- Kim, S-T.(2003), *ODA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 in the context of its evolving diplomatic and economic policies*. Seoul: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Lebovic, J. H.(2005), "Donor Positioning: Development Assistance from the U.S., Japan, France, Germany, and Britai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58(1)
- Maizels, A. & M,K. Nissanke(1984), "Motivations for Aid to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12(9)

Nikolaus P. Himmelmann(1998), "Documentary and descriptive linguistics",
Linguistics 36-1:161-195. Berlin: de Gruyter

R. Glenn Hubbard and Duggan, William(2010), *The aid Trap : Hard Truths About
Ending Poverty*, Columbia Business School

Rodrigues, Carl A.(1990). "When Cross-Cultural Equals Double Cross: How
Developmental Aid Can Backfire." *Administraion and Society* 22(3)

Wolf, C. Jr.(1960), *Foreign Aid: Theory and Practive in Souther As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언론자료

- 김신(2013), “우리나라 공적개발 원조사업, 아시아 국가 편중”, 스카이데일리, 2013.11.03
- 김윤중(2013), “찌아찌아족 5개월만에 다시 한국어 수업”, 동아일보, 2013.01.19
- 류준영(2013), “‘퍼주기식’ 기술원조 한계...돈 버는 개도국 원조 선회”, 머니투데이 뉴스 2013.10.07
- 박양우(2014), “문화ODA에 관심을 기울이자”, 서울신문, 2014.02.13
- 오애리(2013), “절대빈곤 인구 전세계 12억명... 하루 1.25달러로 살아가”, 문화일보, 2013.10.11
- 이성우(2013), “ODA사업 집행 효율성 제고”, 파이낸셜 뉴스, 2013.11.14
- 조보영(2012), “‘녹색 ODA’ 4대강 사업처럼 하면 어찌나”,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2.09.20
- 조이슬(2013), 「우리는 왜 원조투명성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 2013 제 10회 ODA 정책포럼」, ODA WATCH 뉴스레터 84호, 2013.12.3
- 최태욱(2012), “우리 입맛 맞춘 지원보다 그들의 상황 먼저 배려해야”, 조선일보, 2012.10.09
- 하야시다 히데키(2013), “아시아문화의 허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한국일보, 2013.11.14
- Christian Tenbrock (2012), “최단기간에 선진국 도약한 한국 - 독일 주간 <차이트> 한국 경제 특집기사①”, Economic Insight, 2012.08.01

인터넷 사이트

- 문화동반자사업 홈페이지 : <http://www.culturefriends.or.kr>
- 언어다양성 보존 활용센터 홈페이지: www.cld-korea.org
- 외교부 홈페이지 : <http://www.devco.go.kr>
- 세종학당 홈페이지 : <http://www.ksif.or.kr>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www.mofa.go.kr

한국교류협력단 : <http://www.koica.go.kr>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 <http://stats.oecd.org/index.aspx>

ODA KOREA : <http://www.odakorea.kr>

ODA WATCH : <http://cafe.naver.com/ccejoda>, <http://www.odawatch.net>